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111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5. 5. 28 선고 2014나44545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1112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15 선고 2011나1433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7 선고 2009가합1103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주식회사 A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판결 선고 2014. 8. 26.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15. 선고 2011나1433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N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 체결 무렵에는 이미 환율이 상승추세에 있었고 변동성도 컸으므로 환율 상승시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이 환 헤지에 적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고,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은 콜옵션 계약금액이 원고의 예상 달러유입액의 범위를 넘어서 원고에게 과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적합하지 아니한 계약임에도 피고는 계약 체결을 적극 권유하여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에 이르기까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차량용 호스클립 및 프레스 등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회사로 매출액은 2004년 149억 원, 2005년 155억 원, 2006년 164억 원, 2007년 175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원고의 국외 기업에 대한 직접수출액은 2006년 2,834,939달러, 2007년 2,853,727달러에 이르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등 국내 기업에 대한 매출액 중 달러 환율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간접수출액도 2006년에는 합계 1,764,628,379원, 2007년에는 1,585,915,407원에 달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매월 30~40만 달러의 외화 유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C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원고와 본점소재지 및 대표자가 같고 따로 상근직원을 두지도 아니하였으며, 원고의 자금관리 직원으로서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체결을 담당한 E이 D의 감사를 겸임하면서 원고와 D의 자금관리를 같이 하고 있었다.

(다) E은 계약 체결 당시 계약규모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예상 달러유입액을 확인하는 피고 직원 F에게 원고와 D의 외화유입액을 합산할 경우 수출실적은 2007년 517만 달러이고, 2008년에는 75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므로 이를 함께 헤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였다. F은 피고 은행에 개설되어 있던 D 명의의 계좌에 2007. 6. 28.부터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 체결 이전인 2008년 3월경까지 합계 2,219,953달러가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구조,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의 위험성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2008. 3. 5. 통화옵션계약 체결 의사를 밝혔고, 환율 변동 추이를 지켜보다가 2008.

4. 3. 계약금액이 풋옵션 30만 달러, 콜옵션 60만 달러이고 계약기간이 1년인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Window Barrier Target Forward KIKO)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 체결 전에 원고에 대한 신용평가보고서, 감사보고서, 원고가 작성한 기술사업계획서 등을 통하여 원고의 사업현황, 재무상황 등을 심사하였는데, 기술사업계획서에는 원고의 수출액이 2005년 249만 달러, 2006년 384만 달러로 기재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2007. 1. 9. 계약금액 매월 20만 달러, 계약기간 12개월인 단순선물환 방식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하여 수출대금에 관한 환 헤지를 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다시 주식회사 대구은행과 계약금액 월 17만 달러 규모의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08년 4월 무렵은 직전 1개월 동안 달러화 환율이 80~90원 상승하기도 하는 등 2007년과 달리 달러화 환율의 하락 추세에 변화가 생긴 시기이기는 하였으나, 환율상승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다시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상당수 있었고, 삼성경제연구소 등은 2008년 상반기에는 환율이 상승하다가 하반기에는 다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하였다.

(2) 기업이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느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결정할지는 계약 목적, 환율 및 사업전망, 예상 외화유입액의 규모, 위험선호도 등에 따라 기업 스스로 결정할 경영판단 사항이고, 기업은 예상 외화유입액으로서 자신뿐 아니라 계열사나 그 밖에 사업상 관련이 있는 제3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제3자에게 유입될 외화도 함께 고려하여 환 헤지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매년 수출로 일정 규모의 달러화가 유입되었고 국내기업에 대한 간접수출액도 상당하였는데 수출대금의 환 헤지를 위하여 체결한 환변동보험이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 체결 이전에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예상 달러유입액에 관하여 환 헤지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원고의 직원 E은 피고에게 2008년 원고와 D의 외화유입액 합계액이 75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면서 이를 함께 헤지할 계획이라고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기술사업계획서 등을 통하여 원고의 외화유입액이 월 30~40만 달러인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D의 계좌에 계약 체결 이전 8개월간 2,219,953달러가 유입된 사실도

확인하였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E의 진술을 신뢰하여 계약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면 되고 따로 그 진위를 적극적으로 심사·확인하거나 계약체결을 거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콜옵션 계약금액 합계액을 원고가 스스로 제시한 예상 외화유입액 범위 내에서 720만 달러로 권유한 피고에게 오버헤지 발생에 관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에는 기존의 환율하락 추세가 변하고 환율변동성이 커지기는 하였으나 환율의 변동 방향에 대하여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고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환율 상승에 따른 위험성을 알린 이상 실제 환율이 상승하여 원고가 손실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환 헤지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원고의 사업구조, 계약체결 경위, 원고 및 D의 외화 유출입 현황 등의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에게 과대한 위험성을 초래하는 계약 체결을 적극 권유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통화옵션계약에서의 적합성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콜옵션 계약금액이 원고의 예상 외화유입액을 초과하여 오버헤지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그 위험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이 체결된 무렵에는 환율변동성이 컸으므로 피고로서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계약 체결 무렵 피고가 교부한 'USD/KRW Currency Option Termsheet' 등의 기재 내용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이어서 위험성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금융기관이 일반 고객과 사이에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능력이 요구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고객이 그 거래의 구조와 위험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에 내재된 위험요소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인자 등 거래상의 주요 정보를 적합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으나, 고객이 이미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금융기관에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에 이르기까지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단순선물환 방식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사실, ② 피고 직원 F은 2008. 2. 15. 원고를 방문하여 'FX Option 상품안내'를 제시하며 다양한 종류의 통화옵션상품을 단순선물환과 비교하며 설명하였고,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기본 구조 및 환율이 급등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도 자세히 설명한 사실, ③ 피고는 2008. 2. 25. 원고에게 통화옵션계약의 거래조건, 환율변동에 따른 잠재적 위험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의 구체적 금액까지 예시한 시나리오가 기재되어 있는 거래제안서를 보내준 사실, ④ 원고는 환율 변동 추이를 살피다가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자 2008. 4. 2. 피고에게 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실, ⑤ 피고 직원 G는 2008. 4. 3. 전화로 원고와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시 계약의 구조와 조건 및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환율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에 대하여도 언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와 원고가 D의 외화를 합산하여 2008년에 750만 달러가 유입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신뢰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으로 원고에게 오버헤지가 발생한다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가 피고의 설명이나 거래제안서 등의 내용을 오해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구조와 내용, 원고가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발생 가능한 손실의 구체적 내용,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하여 원고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설명이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환율 변동성이 큰 시기에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그로 인한 손실 가능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러한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기본적인 구조와 위험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어서 설령 피고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 및 그 비율 판단을 다투는 취지인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신

대법관민일영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박보영